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기술 전환을 통한 전방위적 거버넌스』 외 3분기 동향 콘텐츠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FAQ
- 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On the board's agenda:
Holistic governance through technology transformation

기술 전환을 통한 전방위적 거버넌스

▶ 본 보고서는 혁신 기술의 시대에서, 이사회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역할, 중요성 및 시사점에 대해 Joanna Burkey(HP Inc. 최고정보보안책임자 겸 Overstock.com/Bed Bath&Beyond 이사), Irfan Saif(딜로이트 US 최고정보책임자 겸 딜로이트 US/글로벌 이사회 멤버) 간의 대화 형식으로 제시함

▶ 주요 내용

① 특정 혁신의 개발 단계나 잠재력 수준이 이사들의 기술 거버넌스에 대한 사고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기술이 초기 개발단계나 빠른 성장단계에 있는 경우, 회사가 기술적 기회와 리스크의 스펙트럼 상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기회와 리스크 간의 균형을 찾는 과정임

②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 현상*과 역포모 현상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다른 사람들이 하는 재미있거나 유익한 일에서 나만 소외됐다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용어

- 새로운 혁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사회 수준의 기술 전략을 갖춰야 함
- 기술 시장의 빠른 발전을 고려할 때 전략과 계획의 일상적인 업데이트는 중요함

③ 인공지능(AI) 등에서 발생 가능한 편향과 같은 기술적 리스크 확인시 이사회 역할은 무엇인가?

- 기술적 리스크 파악시 신기술의 복잡성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
- 이사회 장기적인 목표에 중점을 둔 질문은 기술적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미묘한 차이를 파악하는 데 유익함
- AI 및 유사 기술의 사용으로 거버넌스 영역의 시야가 보다 제한될 수 있으므로, 기술 발전이 빠른 시대에는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재평가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함

④ 기술 거버넌스, 전략 및 이사회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세계화되고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시공을 초월하는 기술의 보편성은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측면과 신뢰 중개자로서의 역할 측면에서 주목해야 함
- 현재 우리의 모든 활동에 기술이 깊숙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 함의를 제대로 파악하는 자가 경쟁우위를 지니게 될 것임

다운로드

Deloitte



On the board's agenda | US
기술 전환을 통한 전방위적 거버넌스
Holistic governance through technology transformation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Board Practices Quarterly 8월호, Future of tech :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미래: 인공지능 (AI)

- ▶ 기업은 효율성 제고, 경쟁우위 확보 및 고객·이해관계자와의 관계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음
- ▶ AI에 관한 탐색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윤리, 규정 준수, 규제 프로세스와 같은 사업적 영향을 고려해야 함
- ▶ 기업 거버넌스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기업 규모별 AI에 대한 조직 내 역할, 규정 및 프레임워크, 리스크 완화 조치, 교육·훈련 및 이사회 감독에 대한 서베이를 실시함
*글로벌 97개 기업의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 및 이사회 사무국 인원
- ▶ 주요 서베이 결과

다운로드



QR 코드



Q1. 귀사는 현재 어느 영역에 인공지능(AI)의 사용을 집중하거나 고려하고 있는가?

- 대형 상장법인은 영업/마케팅(55%), 제품 개발(48%), 법률(42%) 순으로 나타남
- 중형 상장법인은 모름/해당없음(48%), 영업/마케팅(33%), 제품 개발(30%) 순으로 응답함

Q2. 귀사의 인공지능(AI)에 대한 주요 감독 책임은 이사회 내 어느 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가?

- 대형 상장법인의 25%, 중형 상장법인의 38%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명시적인 책임이 없다고 응답함
- 대형 상장법인의 19%, 중형 상장법인의 22%는 아직 이사회 수준에서 AI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Q3. 귀사는 인공지능(AI) 사용에 있어 규정이나 행동 강령이 존재하는가?

- 대형 상장법인의 17%, 중형 상장법인의 46%는 관련 규정이나 행동강령이 없다고 응답함

Q4. 귀사는 인공지능(AI)사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리스크 관리 등의 규정을 개정하였는가?

- 대형 상장법인의 18%, 중형 상장법인의 50%는 개정 이력이 없다고 응답함
- 대형 상장법인의 57%, 중형 상장법인의 29%는 현재 개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남

Q5. 귀사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가?

- 전체 상장법인의 52%는 임직원/이사회 교육·훈련이 부재하며, 11%는 임직원 대상으로 시행중이며, 6%는 이사회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7월호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와 이해관계자의 복합적 역할

- CEO와 최고경영진의 보수는 회사의 주주, 직원, 언론 및 정부 규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제이며 보수 거버넌스의 복잡성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경영진 보수는 기본급, 복리후생, 단기(일반적으로 연간) 성과에 연동된 보너스 제도, 경영진의 이익을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일치시키는 장기 인센티브 등 네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세부사항은 직책, 산업분야, 지역 및 기업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이사회와 보수위원회는 서로 다른 성과측정 기준 기간 (장기 VS 단기)을 가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보수를 결정 할 수 있어야 함

다운로드

Deloitte



Center for Board Effectiveness
On the board's agenda | US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복합적 역할
The complexity of the board's compensation decision

QR 코드



<표1> 경영진 보수 고려 시 이사회 논의를 위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문항

- 회사의 전반적인 전략과 개별 보수 지표 간에 명확한 연계성이 있습니까?
지표가 개별적으로나 총체적으로 전체 전략 목표와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 회사의 경영진 보수 철학과 실행계획은 경쟁력 유지, 리스크 관리 및 장기적인 전략 목표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추고 있습니까?
- 경영진 보수 계획에 스튜어드십, DEI, ESG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들은 현재 회사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고, 적용시킬 수 있는 것 입니까?
- 이사회나 위원회는 경영진 보수에 대해 내부 및 외부 형평성을 분석하였습니까?
이러한 형평성 평가결과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해야 합니까? (또는 공유할 수 있습니까?)
- 어떤 상황에서 이사회나 보수위원회는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에 따라 보수 전략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까? (또는 업데이트해야 합니까?)
- 경영진은 보수 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까? 현재 프로세스는 이사회와 경영진 간의 가치의 일치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참여를 허용합니까?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20 (금) 금융감독원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 ▶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신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함
- ▶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다운로드



QR 코드



1. 사전통지 전체 현황 (1,261사)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61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 대비 237사 감소
 - 535사는 '23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726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전년 10차 사전통지 대비 주기적지정 회사 119사, 직권지정 회사 118사로 총 237사 감소

'23년 10월 사전통지 현황 (단위: 사)

| 구분 | 상장 | | | 비상장 | | | 합계 | | |
|-------|-----|-----|-----|-----|----|-----|-----|-----|-------|
| | 신규 | 연속 | 소계 | 신규 | 연속 | 소계 | 신규 | 연속 | 소계 |
| 주기적지정 | 166 | 326 | 492 | 17 | 37 | 54 | 183 | 363 | 546 |
| 직권지정 | 136 | 309 | 445 | 216 | 54 | 270 | 352 | 363 | 715 |
| 합계 | 302 | 635 | 937 | 233 | 91 | 324 | 525 | 726 | 1,261 |

2. 주기적 지정 현황 (546사)

- (신규지정) 상장사 166사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17사 등 183사가 신규 지정
 - 신규 지정 상장사 평균 자산규모는 3.8조원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9조원, 코스닥시장은 1,822억원 수준
- (연속지정) '21년~'22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63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
 - * 직권지정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회사, '23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형비상장사 자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등 제외

3. 직권 지정 현황 (715사)

- (신규지정)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회사는 352사
 - 신규 지정사유별로 상장예정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74사 등이 있음
 - 상장사 136사, 비상장사 216사가 신규 지정사유 발생
- (연속지정) 기 지정대상인 363사에 대해 연속지정 대상인 경우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하고, 감사인 변경사유 발생시 신규 감사인으로 지정

▶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반영하여 11월 13일에 본통지할 예정임
-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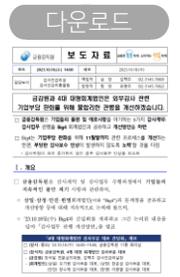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18 (수) 금융감독원

금감원 및 4대 회계법인, 외부감사 관련 기업부담 완화 위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및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기업들의 지속적인 불만 제기사항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18일에 Big4 회계법인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논의내용을 담아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함
- ▶ 주요 내용



| 1.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강화 | |
|--------------------|---|
|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등 감사보수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 제공 미흡 • 감사보수에 대한 환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
| 개선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계약시 참여하는 공인회계사의 직급별 감사시간 및 시간당임률 정보 제공 • 회계법인은 일관성 있는 감사보수 책정을 위한 내부기준 마련 및 운영 • 감사계약시 환급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환급사유 발생시 적극적 환급 실시 |
| 2. 부대비용 청구 적절성 제고 | |
|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법인이 부대비용 협의시 세부명세 미제공 및 실제 청구한 부대비용 중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 일부 포함 • 회계법인의 부대비용 집계 및 내부통제 절차에 미흡한 사항 확인 및 부대비용 관련 회계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 미비 |
| 개선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비용 청구시 명세서 의무 제공 및 실비변상적 성격이 불명확한 경우 미청구 • 회계법인 내부적으로 부대비용 기준 명확화 및 사용자 교육 강화 • 회계법인내 부대비용 점검 시스템 마련 |
| 3. 외부감사 불합리한 관행 개선 | |
| 문제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평가 및 포렌식 등 회계법인의 요구가 증가했으나, 회계법인은 기업의 불량한 외부평가업체 선임에 따른 부적절한 가치평가 우려 • 기업이 부담하는 감사보수가 증가한 반면, 수습회계사의 투입 증가로 감사품질 저하 우려 |
| 개선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평가 등 요구시 필요성을 기업에 자세히 설명하고 감사조서에 문서화 • 평가기관 선정시 기업 의견 존중 및 외부평가 등 재요구시 회계법인내 품질관리실과 사전논의 • 중요 계정과목에 저연차 회계사 배정 제한 및 수습 저연차 회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 • 특정 기업에 수습회계사가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



-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을 완화하고,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책임의식 제고가 기대됨
 - 금융감독원은 금번 논의사항의 개선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관행 등의 개선을 위해 회계법인과 함께 노력할 계획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12 (목) 금융위원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여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임
- ▶ '24년부터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기업이 의무공시 대상 기업으로 진입하는 점을 감안하여, 기업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사전 교육을 진행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발표함
- ▶ 개정 주요내용

1. 배당예측 가능성 제공

- 배당절차 개선방안('23.1월) 후속조치로,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 여부 공시

2. 소액주주·해외투자자 소통 강화

- 소액 주주·해외투자자와 소통한 내역, 외국인 주주를 위한 소통채널 마련 여부 및 영문공시 비율 등 공시

3. 자본조달 현황 기술

- 주주간 이해관계를 달리 할 수 있는 자본조달 현황을 기술토록 하고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소액 주주의 이해를 고려했는지 공시

4. 이사회 다양성

- 다양성을 강조하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방향 등을 반영하여, 다양성·성·연령·경력이 조화를 이룬 이사회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유를 설명

5. 보수정책 및 임원배상 책임보험

- 이사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사의 노력이 보수 결정 과정에 적절히 반영되는지, 임원배상책임보험 제도를 활용하는지 공시

6. 부적격임원 선임 방지

- 임원의 법률위반 공시 범위는 확대*하되, 무기한 공시하도록 하였던 공시기한**은 합리적 조정
 - * (기존) 횡령 배임, 불공정거래(자본시장법) → (개정) 사익편취 부당지원(공정거래법), 회계처리기준 위반(외감법)까지 확대
 - ** (기존) 확정판결부터~무기한 → (개정) 당국 판단시부터~형 집행 종료(면제) 후 5년까지만 공시

- ▶ 한국거래소는 내년부터 지배구조점검체계 개편도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며, 매년 초 중점점검항목 및 항목별 주요 점검사항을 사전예고하여, 기업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 개정 가이드라인은 '23년 실적을 기반으로 '24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임 (제출시한: '24년 5월 말)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0.12 (목) 금융감독원

사고 예방을 위한 은행권 내부통제 점검결과

- ▶ '23.8월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이 요청한대로 거액 금융사고 발생에 대응하여 사고예방 대책 및 내부통제 전반*에 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나타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함

* ①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③ 사고예방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 점검결과

| 1.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현황 | |
|---------------------------|--|
| 자체점검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세부내용을 과제별 일정대로 추진중이며, 확인된 미흡점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계획 금감원은 각 은행별로 미흡점을 개별 은행(19개)과의 면담을 실시(23.9.25~10.3 중)하여 신속 보완토록 지도 실시 |
| 향후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과제 이행시기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유로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과제의 목표 달성시한을 단축 순환근무 예외 직원에 대한 별도 사고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환근무 적용배제 직원 중 기업금융, 외환 파생운용 업무 담당 직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고예방대책 마련 등 |
| 2. 부동산 PF 자금관리에서의 사고징후 여부 | |
| 자체점검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 전산원장상 PF 대출 잔액·거래내역과 PF대출 차주, 대리은행, 신탁사 등을 통해 확인한 잔액·거래내역의 일치여부를 점검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동산 PF 숏 사업자 대상 자체점검 실시 특이사항이 발견된 은행은 없으나,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를 사후검증 중으로 특히, 장기 근무자 관리 사업장 등 내부통제 취약 우려가 있는 일부 사업장을 선정하여 직접 재점검 실시 |
| 향후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PF대출 업무부문에서 내부통제절차(직무분리, 사후관리 등)가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자체점검토록 하여, 보완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조치 하도록 지도할 계획 |
| 3.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전반의 적정성 | |
| 자체점검 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필수 점검항목으로 요청한 KPI 운영의 적정성 및 사고 보고체계의 적정성, 금융사고 유사사례 외에도 횡령사고 개연성이 높은 계좌 점검, 영업 프로모션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다양한 항목을 점검하고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제출 |
| 향후 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선계획의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이며, 실효성이 큰 모범사례는 여타 은행에 대해서도 추가 점검을 요청토록 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도록 유도할 계획 |

다운로드



QR 코드



- ▶ 금번 자체점검은 은행 스스로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하여 적정여부를 평가해보고 미흡사항은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9.25 (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23.7.18 공포, '24.1.19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 개정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 구분 | 내용 |
|--------------------------|--|
| 부당이익의 산정기준 구체적 규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이익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규정하였고,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수입은 실현이익, 미실현이익, 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은 수수료, 거래세 등 매매 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 •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 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익을 산정 -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하여 부당이익 산정 |
| 자진신고 시 과징금 감면 범위와 기준 구체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공정거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하여 진술·증언 시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 •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해당 불공정거래 및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증거 제공, 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 강요 또는 반복적인 불공정거래행위 시 감면을 인정하지 않음 |
|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절차 명확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원회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 부과 가능 |

- ▶ 금융위원회는 해당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9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실시 예정이며 후속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24년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9.22 (금)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 실시

- ▶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 재무제표 심사 및 회계감리 등 회계감독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도 동 개정안에 반영됨
- ▶ 개정안 주요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 구분 | 내용 |
|--|--|
|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기업, 감사인) 의견청취를 통한 자율조정안 제시 감사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조정안 거부 시 금융감독원에 지정취소 건의 가능 |
| 소규모 상장사 (자산 1천억원 미만) 가치평가용역 수행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평가기관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보장하되,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거치도록 제도 정비 계획 * (선정 프로세스 예시) 피감기업이 용역특성, 비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제공하는 외부 전문평가기관 Pool 내 3개사(잠정) 내외 선정 → 지정감사인과 협의 후 3개사 중 최종 1개사 선정 |
| 회계감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부정 위험이 높은 지정감사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착수 근거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산시스템 분석 등을 통한 회계부정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지정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재무제표 심사 대상 기업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근거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무제표 심사 과정에서 발견한 특이사항 관련 감리집행기관의 서면 자료제출 요청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 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부과방식 적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 부과기준을 세분화 (5단계 → 8단계)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실무적으로 적용중이던 과징금 산정 및 부과방식을 규정으로 명문화 |

- ▶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은 9.22일(금)부터 10.4일(수)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앞서 입법예고('23.8.16~9.25)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24년 1월)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수행할 계획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9.13 (수)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 ▶ 금융위원회는 '주요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의 후속조치로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함
- ▶ 감사인을 지정 받는 기업들의 감사부담을 합리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후 고시하는 '23.9.14 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임
- ▶ 개정고시안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1.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적용 합리화

① 재무기준 직권지정 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 (현행) 직권지정기간(3년) 중 다른 직권지정사유 발생시 지정기간(3년)이 새롭게 시작되었으나 직권지정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 사유는 사유 간 연관성이 크고, 쉽게 해소되기 어려워 과도하게 지정이 장기화되는 경향
- (개선)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 동일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자유선임 계약기간(예:3년)을 보장*
 - * 후행 지정처분 여부는 선행 지정기간이 종료된 다음 사업연도부터 3년간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②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기준 합리화

- (현행)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 여부는 연결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지배기업 본연의 사업성과를 지정 여부 판단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 * 중요도가 낮은 종속기업의 일시적인 경영상황 악화에도 지배기업이 직권지정
- (개선) 재무기준 직권지정 대상은 별도재무제표상 재무수치를 기준으로 판단

2.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 (현행) 자유선임 시 해당 기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력으로 감사팀을 구성하지만, 지정 감사시에는 자유선임시에 비하여 감사팀 내 해당 산업 등에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미흡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있음
- (개선)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지정제외점수 40점을 부과하는 등 감사팀 내 산업전문인력을 최소 1명 이상 배정

3.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 (현행) 회계법인에 경력기간이 긴 회계사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도록 설계되어 회계사 연차가 높을수록 많은 기업이 배정되는 경향
- (개선)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시 고연차 회계사의 지정점수를 직장인의 정년퇴직시기 등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

4.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현행) 지배·종속기업 중 일부만 감사인 지정을 받은 경우, 감사인 일치를 위해 기업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시에는 다른 감사인이 지정되는 비효율적인 사례가 발생
- (개선) 지배·종속기업의 지정감사인 일치를 위해 지정 요청시 사전통지부터 동일 감사인을 지정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9.8 (금) 금융감독원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 상장법인 2,511사의 FY2022 감사보고서를 분석함

* '23.3월말 주권상장법인 2,589사 중 외국법인, 페이퍼컴퍼니 등 78사 제외

- 유가증권 796사(31.7%), 코스닥 1,584사(63.1%), 코넥스 131사(5.2%)
- 12월 결산 2,473사(98.5%), 연결재무제표 작성 1,943사(77.4%)

➤ FY2022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1. 감사의견 현황

- (적정의견) 적정의견 비율은 97.9%로 新 외부감사법 시행('19회계연도) 이후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 (97%대) 유지
 - * 적정의견 비율: ('19년) 97.2% → ('20년) 97.0% → ('21년) 97.2% → ('22년) 97.9%
- (비적정의견) 상장법인 53사가 비적정의견으로 전기(68사) 대비 15사 감소
 - 한정 의견 7사, 의견거절* 46사로 의견거절은 '20년을 정점(65사)으로 감소 추세*
 - * ('20년) 65사 → ('21년) 58사 → ('22년) 46사
 - 비적정의견*은 감사범위제한(45사), 계속기업 불확실성(26사)이 주요 원인
 - * 한 기업의 비적정의견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중복하여 계산

2. 강조사항 등 유의사항 기재 현황

- (강조사항)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을 기재한 상장법인은 289사(11.5%)로, 전기(572사, 23.6%)대비 크게(Δ283사, Δ12.0%p) 감소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19관련 강조사항이 감소한데 주로 기인함
 - *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 주의 환기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사항
- (계속기업 불확실성) 적정의견 법인(2,458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상장법인은 85사로 전기(92사) 대비 7사 감소*
 - * (20년) 105사 → ('21년) 92사 → ('22년) 85사
 - 자산규모별(85사): 1천억 미만(61사), 1천억~5천억(15사), 5천억 2조(7사), 2조 이상(2사)
 - '21년에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상장법인(92사)의 상장폐지·비적정의견 비율은 12.0%로 미기재 법인(1.9%)보다 약 6배 높았음

3. 감사인 분포

- (회계법인 규모별)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의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20회계연도 이후 31~32%대 수준을 유지
 - * 감사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 ('20년) 31.0% → ('21년) 32.6% → ('22년) 31.8%
 - 중견회계법인(Top 10 중 하위 6사)의 감사비중(32.3%)도 소폭(+1.1%p) 증가
- (감사대상 자산규모별) Big4의 자산 2조원 이상, 5천억~2조원 미만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각각 92.4%, 57.8%로 Big4 비중이 높음
 - 자산 5천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의 Non-Big4 비중*은 78.4%
 - *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 4 비중: ('20년) 79.6% → ('21년) 78.0% → ('22년) 78.4%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2023.9.8 (금) 금융감독원

2022 회계연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분석 및 시사점 (계속)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 (감사의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비적정의견 비율은 2.5%(38사)로 전기 (445사 중 비적정 4사, 0.9%) 대비 1.6%p(34사) 증가*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대상 증가(+1,065사) 및 인증 수준 강화(검토→감사)로 비적정의견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비적정의견 38사 중 부적정의견은 20사, 의견거절은 18사로 이 중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의견을 받은 법인은 21사
 - * 부적정의견: 평가기준일 현재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할 경우
 - 의견거절: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감사범위 제한)

▶ 시사점

| 구분 | 내용 |
|--|---|
| 비적정 의견 비율 감소 추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20 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엄격한 감사환경을 조성한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 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등 • 상장법인도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재무제표가 적절하게 작성·공시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함 |
| 재무제표 수정 내역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예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 건은 48건(13.1%)으로 여전한 바,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충실하게 구축·운영하여야 함 • 금감원은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감리 등을 통해 엄정 조치 예정 |
| 감사보고서상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내용에 유의 필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보고 이용자들은 의사결정시 계속기업 불확실성을 기재한 회사의 위험성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감사의견이 적정임에도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한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상황 및 영업환경 등의 개선이 없는 경우 향후 비적정의견을 받거나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음 |
| 상장법인 규모에 따른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분포 양분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2조원 이상 4대 회계법인(Big4) 감사비중은 92.4%이며, 자산 5천억원 미만 Non-Big4 비중은 78.4%로 자산규모에 따른 회계법인 분포가 양분 •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능력 제고, 감사품질 경쟁촉진을 위한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 방안을 추진 중 • 회계법인은 가격중심의 수임경쟁을 지양하고 감사품질 개선 노력을 통해 외부감사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9.1 (금) 금융위원회

ESG 평가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한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 시행

- ▶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업무 수행 모범규준인 'ESG 평가기관 가이드스'(이하 가이드스)가 '23.9.1부터 시행됨
-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의 지원 하에 국내 주요 ESG평가기관 3개 회사(한국ESG기준원, 한국ESG연구소, 서스틴베스트)가 자율규제로서 운영함
 - 평가업무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시함(총 6개 장, 21개 조문*)
 - * ①총칙 ②내부통제체계 구축 ③원천데이터의 수집·비공개정보 관리 ④평가체계 공개 ⑤이해상충 관리 ⑥평가대상기업과의 관계

다운로드



QR 코드



- ▶ 3사는 가이드스 준수를 공식 선언하고, 가이드스 세부항목별 준수 여부를 원칙준수·예외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으로 공개함
 - *참여기관이 가이드스의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되,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제도
- 각 사의 평가절차, 평가지표가 담긴 평가방법론을 공개함

| 구분 | 준수 현황 |
|------------------|---|
| 한국ESG기준원, 서스틴베스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장 21개 조문 모두 준수 |
| 한국ESG연구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 조문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준수 항목은 평가기업과의 피드백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추후 관련 절차를 보완할 예정 |

- ▶ 3사는 국내 ESG 평가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 'ESG 평가기관 협의체'를 발족함

| 구분 | 내용 |
|------|--|
|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의 평가기관으로 구성 •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이 관찰자(옵저버)로 참여 |
| 운영계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가이드스의 실효적인 운영을 자율적으로 점검 • 국내외 ESG 평가기관의 가이드스 준수 및 협의체 참여 권고·지원 • (한국거래소 공동) 가이드스 이행 현황 비교·분석하여 정기 보도자료 배포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24 (목) 법무부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 ▶ 법무부는 8월 24일, 기업환경 개선과 주주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코로나19 이후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와 디지털전환에 따라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음
 -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서도 주주권 보장의 일환으로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권고
 -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기업 구조조정 및 인수합병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 지원을 위하여 기업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있음
-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시 물리적 주주총회 원칙으로 인한 주주권 행사의 한계와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기업 비용 부담의 개선이 기대됨
- ▶ 개정안 주요 내용

1.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 주주총회 통지, 투표, 회의 전반 전자화

- 상법 개정안 제364조의2 등
 - 모든 주주가 전자적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주주총회', 소집지 또는 전자적 출석을 선택할 수 있는 '병행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이를 통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
- 상법 개정안 제363조 제1항
 -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위한 주주 동의 방식의 명확화를 위해, 대통령령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주주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음을 명문화

2.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 강화 등

- 상법 개정안 제530조의12 제2항
 - 분할회사 총자산액의 10%를 초과하는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 * 기업 구조변경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회사에 일정 가격으로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음
 - ** 상정사는 '22.12경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물적분할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이 이미 부여
- 상법 개정안 제374조 제2항, 제3항,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 6항 등
 - 합병, 분할 등 기업 구조변경 효력발생일까지 회사가 설정한 매수가액을 전액 지급하는 경우 반대주주를 채권자 지위로 전환
 - 매수대금에 다툼 발생 시, 회사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하여 주주에 통지한 매수가액 이상의 금액 공탁 허용
 - 주주에게 구체적인 매수가액 산정근거 제시, 열람등사청구권 보장

다운로드



QR 코드



- ▶ 법무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켜 2024년 연중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17(수)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 개최

- ▶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23.8.17(목) 은행 연합회 및 17개 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함
- ▶ 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운영

다운로드



QR 코드



| 구분 | 내용 |
|-----------------------|--|
| 은행권 자체점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등을 은행장 주관으로 직접 종합 점검 실시 요청 (은행장 확인서명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제시스템이 일선 영업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와 경영진의 일관성 있는 역할과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 - 점검항목: ①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②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③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8.31까지 제출) • 금감원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재점검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신속한 개선 및 보완을 지도할 예정 |
| 건전·건강한 지배구조 및 조직문화 정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KPI) 개선,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관용없는 조치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 노력 요청 |
|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기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예방을 위한 감독 검사 기능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한편 금융사고에 책임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 |

- ▶ 참석한 은행장들은 내부통제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은행차원의 관리강화와 함께 내부통제 자체 종합점검에 적극 협조할 예정임을 언급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16 (수)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 금융위원회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23.6.12)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23.8.16 ~ '23.9.25)를 진행함
- ▶ 법제처 심사 및 국무·차관회의 의결 등을 거쳐 '24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1. 자산 2조원 미만 상장사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5년 유예 ('24년 → '29년)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금년부터 도입하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유예 신청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
 - 유예를 원하는 경우 외부감사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기간 내(9.1~9.8) 금감원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에 심사를 신청

-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약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의 유예를 허용하고, 유예 사실 및 사유 등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토록 할 방침

*심사기준(안): ① 23년중 중요한 자회사 취득으로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경우, ② 자산 2조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으로서 차기년도에 자산 2조원 미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거나, 최근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연결 준비가 부족하여 유예기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2.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사유 폐지

- 종전에는 기업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증선위가 다음 사업 연도의 감사인을 직접 지정하였으나, 회계부정발생 가능성과의 상관관계가 크지 않음에도 직권지정사유가 되어 기업에 필요이상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시행령에 근거한 기타 직권지정사유는 '폐지 후 과태료 전환' 예정으로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한 후 폐지
- 직권지정사유로서 '관리종목 지정'은 유지되어 투자자 보호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표준감사시간 심의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 공인회계사회장이 위촉한 위원(9명)과 금감원 위원(1명)만으로 기업계(5명) 참석 없이 회의 개최·결의가 가능*하다는 지적을 감안
 - * 심의위는 전체 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의회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공인회계사회장이 추천한 '회계정보이용자' 위원 규모를 축소(4명→2명)하고, 추천기관을 변경(공인회계사 회장 → 금감원)
 - * 2명중 1명은 학계인사로 추천

4. 거래소 내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지정감사인과 기업 간 중립적인 분쟁조정기구로 활용

- 금감원과 공인회계사회에 분산되어 있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 및 분쟁 조정업무를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한국거래소)로 일원화, 감사인의 권한남용이 확인되는 경우 증선위(금감원·공인회계사회에 위탁)에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 거래소에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따른 분쟁의 자율 조정업무를 위탁하고, 중소기업 회계지원센터를 통한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식*은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마련할 계획

* 조정프로세스(안) ① 신고접수(사실관계 확인) → ② 1차 조정(실무차원 조정안 제시) → ③ 2차조정(전문가회의체를 통한 조정) → ④ (조정 불성립시) 금감원 공인회계사에 이첩 및 제재조치 건의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14 (월) 금융감독원

新 XBRL 재무공시 시스템 시범가동

▶ XBRL 재무공시 확대 시행* 전, 제출인이 XBRL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제출해보고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도록 XBRL 재무공시 시스템을 시범가동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제출인을 지원할 예정임

* 본문(금융사, 주요 비상장사): 23년도 3분기 보고서(23년.11월 ~), 주식(자산총액 2조원 이상 비금융업종 상장사): 23년도 사업보고서(24년.3월)~

다운로드



QR 코드



| 구분 | 내용 |
|-----------|---|
| 모집대상 및 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희망 기업은 소속 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신청(금융사) 제출인 소속 금융협회*를 통해 모집(상장·비상장 금융사) *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상장사) 소속 협회(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를 통해 모집하되, 재무제표 주식 대상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비금융업종)로 한정 (기타 비상장사) 소속 협회가 없는 비상장법인(비금융업종, 사업보고서 제출 & IFRS 적용 한정)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 본부 통해 모집 |
| 시행시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사, 비상장사(본문) 및 상장사(주식)로 구분하여 시행시기를 각각 운영 (금융사·비상장사)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23.8.14.) 이후부터 9월까지 재무제표 본문 작성 및 제출 점검 (비금융업 상장사)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23.8.14.) 이후부터 12월까지 재무제표 본문·주식 작성 및 제출 점검 |
| 운영방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 기업은 기 제출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XBRL 재무제표를 작성·제출하고, 유관기관은 제출된 XBRL 재무제표를 점검하여 피드백을 제공하고 금융감독원과 주요 이슈사항 등 협의 제출인(필요시 회계법인과 협력)이 XBRL 재무제표 본문 및 주식(상장사) 작성 작성된 XBRL 파일을 사업보고서 등에 포함하여 제출 유관기관은 소속 제출인에게 재무제표 작성 관련 리뷰 등 피드백 제공 금융감독원은 발견되는 주요이슈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 기술지원 등 제공 |
| 기대효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XBRL 재무공시 확대 시행으로 XBRL 재무제표를 처음 작성하는 제출인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제출인의 재무공시 역량을 제고 시범가동 중 제출인 등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안정적인 XBRL 시스템 운영 및 제출인 편의성 향상 기대 |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8.9 (수) 금융위원회

금융회사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장 긴급조치(Fast-track) 로 검찰에 통보함
 - 해당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상장법인의 무상증자 업무 중에 지득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직접 주식거래를 함
 - 해당 정보를 타 부서 직원 및 가족, 지인 등에 전달하여 매매에 이용하게 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적발됨
-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사 초기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하여 중요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실시함

다운로드



QR 코드



| 구분 | 내용 |
|------|---|
| 조사결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월 ~'23.4월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 지득하여 총 매매이익 127억원 상당을 취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 매수,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 상승 시 대상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 실현 방식으로 매매 이익 취득 -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직원, 가족친지, 지인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하여 매매 이익을 취득하게 함 •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함 -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관리 등에서 미흡점이 발견되어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책임 여부를 명백화 예정 <p><small>* 고객사와 상담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small></p> |

-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임
 -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사에 대해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하고,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7.21(금)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규정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23.5.2.)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함(23.7.20. 시행)

※ 다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23.1.1.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

- ▶ 주요 개정내용

1.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
- 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감리조치 감경시 신고자 등이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 가능
 - * ❶ 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❷ 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❸ 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외부감사법 시행령32①1호 각목)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감리조치시 검찰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음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 실시 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는 감리조치시 가중사유에서 제외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정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조치수준을 1단계 하향하고, 3일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
- 사업보고서 오류·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수준 차등화
-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하는 규정을 신설

4.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조정

- 감사인군 구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

* (기존) 자산 1천억원 이상 → (변경) 자산 5천억원 이상

※ 다만 ❶ 사업보고서제출회사, ❷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 1천억원 이상

다운로드



QR 코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동원그룹, 지배구조 개편 후 신성장동력 발굴에 속도 [툭데일리]
- 삼성 콘트롤타워 부활할까... 지배구조 촉각 [뉴시스]
- 달라진 금융권, 회장 선임부터 맑고 투평하게... 지배구조 개선 열풍 [뉴스퀘스트]
- 20년 전에 머물러 있는 국민연금운용 지배구조 [매일경제]
- 상호금융 지배구조-내부통제 조인다... 이사장 장기재임 제한 [연합인포맥스]
- KB금융 윤종규 회장 "지배구조에 정답이 있다는 생각은..." [연합뉴스]
- 경영진 정조준 지배구조법 개정안, 빠져나갈 구멍은 여전 [프라임경제]
- 정의선의 숙원, '지배구조 개편'... 보스턴다이나믹스 눈길 [툭데일리]
- 지배구조 개편 오투기, 왜 공정위 조사 받게 되었나 [시사저널e]
- 이사회 문턱 넘은 국민연금 지배구조자문위... 명확한 정체성 확보가 관건 [시사저널e]
- 중대 금융사고시 CEO도 책임져야, 정부·여당,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 은행 지배구조 TF 2차 회의... CEO 선출 방식 선진화 추진 [조선비즈]
- 우등생 만나? 지배구조 취약 기업 수두룩한 코스닥 글로벌 [비즈워치 PICK]
- 윤리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ESG 경영 실천 [프라임 경제]



이사회·감사위원회

- 사외이사 책임 묻는 판례 늘어난다 [서울경제]
- 거수기는 그만... 사외이사 책임 커진다 [조세일보]
- 이사회 효율성 높이려면... 멤버들과 경영 가치·전략 공유하라 [매일경제]
- '준법경영, 기업문화로 정착' 삼성준감위, 컴플라이언스 워크숍 개최 [서울경제]
- 합병 위한 관문... 아시아나 이사회에 쏠리는 눈 [연합인포맥스]
- 아모레퍼시픽그룹, 6년 연속 ESG 종합등급 A 받은 비결 살펴보니 [뉴스투데이]
-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 문제... 한투운용, 세미나 개최 [한국경제]
- 상장 VC 사외이사, 전문직·현직 종사자 출신 선호 [한국금융신문]
- 대유, 이사진 후보 코스닥협회 통해 투명한 선정... 최대주주 영향력 배제 강수 [서울경제]
- 소비자보호 조직 별도 만들고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감사위원회포럼, 내달 정기 포럼... 'ESG 공시 산출 프로세스' 초점 [뉴스원]
- 국내 ESG 평가기관 아직 수준 미달... 금융 부문별 특성 반영 없어 [한성경제]
- 커지는 ESG 공시 시장... 인증은 누가 맡을까? [여성소비자신문]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

- 먹고 먹히는 제약바이오 M&A, 이중결합 다각화로 글로벌 도전장 [이뉴스투데이]
- 동원그룹, 과감한 M&A 17년새 자산·매출 4~5배 증가 [톱데일리]
- 공정위, 인수비용만 28조 포토샵 어도비·피그마 M&A 심사한다 [브릿지경제]
- 보험권 M&A 매물 희비... MG손해보험 울고, KDB생명 웃고 [아주경제]
- M&A, 딜 클로징에 치중... 조단위 신규 물량 실증 [연합인포맥스]
- 롯데카드 등 줄줄이 매각지연... M&A 1년 새 41% 급감 [서울경제]
- 지주사 전환 외친 강신숙... 수협은행, 올해 안에 M&A 성공할까 [뉴스웨이]
- 동남아 M&A 집중한 한일 금융... 적극적 경쟁 중 [연합인포맥스]
- 금융당국이 키운 대출플랫폼은 왜 혁신금융 M&A 1호가 됐나 [헤럴드경제]
- 4대 금융지주, 비은행 사업 총력... M&A 승부수로 외연확장 [브릿지경제]
- 국내 M&A 시장서 인기 높아지는 의료기기 [데일리메디]
- 플랫폼화 가속... 글로벌 보안 시장 M&A 열기 고조 [디지털투데이]
- 빙하기 온 스타트업 투자시장, 활로로 떠오른 M&A [이코노미스트]
- M&A시장 휩쓰는 헤지펀드 [매일경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방지

- ‘내부통제 붕괴’ BNK경남은행, 이번엔 금융위원회도 패싱? [데일리굿뉴스]
- 또 다시 국감 화두된 은행권 내부통제 [IT조선]
- 최근 6년8개월간 상호금융 불법대출 87건, 흥성국 “금융감독체계 개선 필요” [비즈니스포스트]
- 최근 3년 상장사 임직원 연루 불공정거래 145건, 금감원 직접교육 나선다 [비즈니스포스트]
-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아시아경제]
- 내부통제·인프라·신뢰 3대 혁신... 경남은행, 환골탈태할 것 [파이낸셜뉴스]
- ‘제2 라덕연’ 막자... 신고 포상금 확대·자산동결제 추진 [조선비즈]
- 금융 업권별 횡령·배임 연달아 드러나... 내부통제 강화 어떻게? [투데이뉴스]
- 회계 부정 발견 시 증선위 신고 의무화... 외부감사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 금감원·국수본, 자본시장 불법행위 강력 대응... 합동단속반 운영 [연합인포맥스]
- ‘분식회계·사적유용’ 공익법인, 3년간 국세청 개별검증 받는다 [한국세정신문]
- 경남은행 PF 직원이 500억대 횡령... 금감원, 긴급검사 착수 [조선일보]



규제 동향

- 금융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배당절차 개선 등 반영 [머니투데이]
- 금감원, “장기근무·명령휴가 등 내부통제 누락 발견”... 은행에 개선 지시 [뉴시스]
- 달라지는 ABS법에 기업·카드사 울상... 결제대금 유동화 위축될까 [연합인포맥스]
- 벤처캐피탈 규제 정비·혜택 확대... 투자 활성화 [정보통신신문]
- ESG 의무공시 1년 늦춘다... 금융위, 17일 발표 [이데일리]
- 금융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유경제]
- 18번 개편으로 누더기된 리츠 제도... 정부, ‘전면 개정’에 규제 완화 착수 [조선비즈]
- 거세지는 환경규제, 방패 없는 기업들 속수무책 [투데이에너지]
- 금융위, 외부감사 규정 대폭 개편 [소비자를 위한 신문]
- IFRS17 가이드라인 시행세칙으로... 보험사 감독회계 세진다 [연합인포맥스]
- 증선위 분식회계 자료 법원송부 실효성 제고 외감법 개정안 발의 [국세신문]
- 금융위 “ESG 공시, 글로벌 정합성과 韓 산업구조 특성 모두 고려” [머니투데이]
- ISSB 기준, ESG공시를 회계 영역으로... “재무제표 영향 화폐화해야” [이에스지경제]
- IFRS 가이드라인, 회계제도변경 아니지만 올해엔 소급적용 가능 [한국경제]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 개최 [파이낸셜 뉴스]
- 딜로이트 안진, 전종무 파트너, '내부통제 기본은 영업과 운영 분리' [서울경제]
- 광고 보는 OTT와 화합물 전력반도체 뜬다... 딜로이트가 분석하는 TMT 트렌드 [IT조선]
- 딜로이트 안진, 해외 진출 국내 기업을 위한 글로벌 인사·세무관리 세미나 개최 [조선비즈]
- 경고등 켜진 M&A시장, 딜로이트안진 솔루션은 '섹터플레이' [더벨]
- 한국딜로이트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단 위촉[파이낸셜 뉴스]
- 딜로이트 안진, 인천 항운·연안아파트연합 이주조합과 업무 계약 체결 [이데일리]
- 딜로이트 안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실무 교육 영상' 무료 제공 [조세일보]
- 김우성 딜로이트 전무, "기업들, AI 활용하려면 AI 윤리기준부터 마련해야" [IT조선]
- 딜로이트 안진, DB금융투자과 재무자문 서비스 MOU 체결 [조세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업무 분장표 사라진다... 기업 리더 59%, 업무 재구상에 집중"[CIO코리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3 글로벌 인적자원 트렌드 보고서' 발간 [뉴스와이어]
- 안진회계법인 글로벌최저한세 전문팀 '글로벌 최저한세' 초읽기 [매거진한경]
- 굿센-딜로이트 안진, 지능형 자금사고 방지 파트너십 [지디넷코리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인공지능 활용서:6대 산업별 활용사례' 발표 [CIO코리아]
- 딜로이트,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창간호 발간 [헤럴드경제]



회계투명성

- 회계담당자 77%, "기업부채 늘어... 연말 결산, 자산평가·손상인식 살필 것" [서울경제]
- ESG 정보 신뢰성 높이면 회계감사 기준 강화해야 [문화일보]
- 금융위,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변경 예고 [국세신문]
- 5년 전부터 예고했는데... 회계 규제 또 미뤄달라는 자산 2조 기업들 [비즈조선]
- EU, 감사인이 ESG 공시도 감사... 국내 도입해 신뢰성 높여야 [서울경제]
- 노조 회계공기 시스템 내달 1일 개통...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연합뉴스]
- 금감원, 올 3분기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 개최 [국세신문]
- 분식회계 기업은 망하는데... 한국 신뢰도 추락 [조선일보]
- 회계개혁, 기업 부담 고려하되 계속 추진해야 [조세일보]
- 투명성 높은 표준시스템 구축 독립팀 늘려 내부통제 강화도 [매일경제]
- 기업 73%, "신외감법 시행이 회계투명성 개선에 도움" [조선비즈]
- 금감원, 감리조치 조건 완화 "회계투명성 증대" [메트로신문]

IV. FAQ

1.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규정 개정 등)의 구체적인 진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 '23.6.12 발표한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¹⁾ 후속조치 및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규정 정비를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규정 개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은 상반기 중 추진, 입법필요사항은 '23.4분기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 ▶ '23.9.13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 및 시행되었으며²⁾,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임³⁾
-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업무절차 등 시행령 위임 사항 등을 정하는 외감규정안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3.9.22 ~ '10.4)하였으며, 개정안의 시행시기('24.1)에 맞춰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밟아 나갈 계획임⁴⁾
- ▶ 회계제도 보완방안 추진경과

| 추진과제 | 담당 | 추진경과('23.10.15 기준) |
|-------------------------------|----------|---|
| 1.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부담 완화 | | |
|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제도 개선 | | |
| ①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시기 조정 | 금융위 | 시행령 입법예고 (~9.25) * '24년부터 시행 예정 |
| ② 연결 대상 종속기업 기준 명확화 | 금융위· 금감원 | 감독지침 등 마련 예정 ('23.3분기) |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범위 연결기준으로 일원화 | 금융위 | 시행령 개정 예정 ('23.4분기 완료 목표) |
| • 신규 상장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부담 경감 | 금융위 | 법률개정안 마련 중 |
| 2. 상장회사 감사인 지정비용 합리화 | | |
| • 감사인 직권지정사유 완화 | 금융위 | 법률개정안 마련 중 |
| ①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 폐지 | 금융위 | 시행령 입법예고(~9.25) * '24년부터 시행 예정 |
| ② 재무기준: 폐지 | 금융위 | 법률개정안 마련 중 |
| ③ 그 외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 완화 | 금융위 | 법률개정안 마련 중 (법 개정 통해 과태료 부과근거 마련 후 폐지) |
| • 주기적 지정제 보완 | 금융위 | 추후 검토 |

1) 금융위원회,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회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회계제도 보완방안 마련-, 2023.6.12

2)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원회 의결-시행», 2023.9.13

3)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23.8.16. ~ 9.25.)», 2023.8.16

4) 금융위원회,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23.9.22. ~ 10.4.)», 2023.9.22

IV. FAQ

1.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규정 개정 등)의 구체적인 진행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 추진과제 | 담당 | 추진경과(23.10.15 기준) |
|---|-----------|--|
| 3. 표준감사시간 적용 유연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준감사시간 법적 성격 명확화 | 금융위·한공회 | 한공회 회칙·행동강령 개정 (24.1월부터 적용 추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위 구성·운영의 독립성 강화 | 금융위 | 시행령 입법예고 (~9.25) * '24년부터 시행 예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회계법인간 감사시간 합의과정 내실화 | 금융위·금감원 |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23.3분기) |
| 4. 지정감사 부담완화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립적 분쟁조정기구 신설 | 금융위·거래소 등 | 중기 회계지원 센터 內 운영 시행령 입법예고 (~9.25) * '24년부터 시행 예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감사인 산업전문성 확보 유도 | 금융위·금감원 | 외감규정 개정 완료 (규정 시행일: '23.9.14) 시행세칙 개정 예정 (24.1.1일 이후부터 적용 예정)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 금융위 | 외감규정 개정 완료 (규정 시행일: '23.9.14) |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웨비나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현재 집중해야 할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 금번 웨비나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다뤄야 할 투명공시와 新외부감사법의 효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부정조사 및 보고의무와 AI·빅데이터 자문 사례 등 주요 현안 및 인사이트를 제시하고자 함
- ▶ 웨비나 일정 & 프로그램안

초청장

신청하기

QR 코드



| 구분 | 내용 |
|----|---------------------------------|
| 일시 | 2023년 11월 09일 목요일 14:00 ~ 16:10 |
| 장소 |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접속링크는 추후 개별 안내) |

* 교육확인서는 본 웨비나 종료 후 온라인 발급 가능

| 시간 | 진행활동 | 연사 |
|----------------------|-----------------|--|
| 14:00~14:05 (05분) | Opening Remarks | 사회자: 김한석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센터장 |
| 14:05~14:30 (25분) | 세션 1.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유승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투명공시와 新외부감사법의 효과 |
| 14:30~14:55 (25분) | 세션 2.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장정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
| 14:55~15:05 (10분) | Break Time | |
| 15:05~15:30 (25분) | 세션 3. | 한국 딜로이트 그룹 Core Technology (AI&DATA) 이성호 상무 -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변화의 흐름 |
| 15:30~15:55 (25분) | 세션 4. | 한국 딜로이트 그룹 재무자문본부 임규동 파트너 - 부정조사 및 보고 의무(사고사례 및 조사대응 중심) |
| 15:55~16:10 (15분) | Q&A/Closing | 세션 강연자, 사회자 |

※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IV. 주요 행사

Upcoming events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웹 세미나] 향후 지정학: 2024년의 미국, 유럽, 아시아

| 구분 | 설명 |
|----|--|
| 일시 |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0 |
| 장소 |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
| 패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 Baron van Daele (벨기에 국왕의 국무장관(RTD) 대사) • Anthony L Gardner (유럽 연합 주재 미국 대사, 2014-2017) • Iberdrola (제 2 부 회장, Brookfield Asset Management 상임 고문, Brunswick Group 고문) • Shahira Knight (Deloitte US 정책/대정부 관계 관리 책임자, 전 백악관 입법 업무실 국장)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1-2022) |
| 개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에는 동유럽의 황폐화, 중국과 미국 간의 긴장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식량 안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함 • 2024년을 앞두고 기업은 어떤 지정학적 환경을 기대해야 하는지, 다가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정학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정학적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럽과 확장된 NATO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러시아 내부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중국은 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에 대해 논의 예정 • 이사회가 2024년을 전망하며 고려해야 할 미국, 유럽, 중국의 새로운 지정학적 주제들을 살펴볼 것임 |

신청하기

QR 코드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3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8월 31일, 거버넌스 현안과 함께 국내 상장법인 현황에 대한 통계 분석을 담은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3호(연4회, 계간지)를 발간함
- ▶ 전문가 기고 섹션에서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Audit&Assurance 오정훈 파트너가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현황을 분석하고 유형별 사전예방 수단에 대한 의견을 담았으며,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의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적절한 내부통제 감독 수행의 중요성」과 관련한 칼럼도 수록됨
-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국내 기업들이 거버넌스의 개선을 위한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

다운로드



카드뉴스

QR 코드



| 구분 | 기업지배기구 Insights 제 3호 목차 |
|--------------|---|
| I. 전문가 기고 | ① 해외자회사 자금통제 안전한가 - 한국 딜로이트 그룹 Audit&Assurance 본부 오정훈 파트너 ② (감사위원인) 사외이사의 내부통제 감독에 대한 역할과 책임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중앙대학교 경영학부 박재환 교수 |
| II. CCG 아젠다 | ① 경영진 보수 결정에 대한 이사회 의 복합적 역할 ②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의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확보 현황 |
| III. 데이터 포인트 | ① FY2021-FY2022 KOSPI 200 기업 준법지원인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 현황 ② 2021~2023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핵심지표 준수 현황 |
| IV. 주요 규제 동향 | ① ISSB, 첫 번째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발표 ②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群) 구분 세부기준 등 |
| V. FAQ | ①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I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창간호 발간

-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7월 31일, 국내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 관련 현황 정보 분석 결과를 담은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창간호를 발간함
- ▶ 본고는 FY2021과 FY2022간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와 관련한 공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및 상반기에 주목할 주요 규제 동향을 수록함
-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국내 KOSPI 200 기업의 이사회와 관련한 공시 정보항목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센터 고유의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향후에도 국내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먼저 짚어보고 추후 기업지배기구의 발전방향을 논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둘 것”이라고 밝힘

다운로드



카드뉴스

QR 코드



| 구분 |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창간호 주요내용 |
|-----------------------------------|--|
| I. 이사회 주요 현황 - KOSPI 200 기업을 중심으로 | ① 이사회 구성 ② 이사회 내 위원회 ③ 이사회 안건 ④ 이사회 회의 ⑤ 이사회 성 다양성 ⑥ 사외이사 전문성 ⑦ 내부감사부서 독립성 ⑧ 이사회·위원회·개별 사외이사 성과평가 ⑨ 사외이사 보수 ⑩ 사외이사 교육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⑪ 외부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⑫ 결언 |
| II. 2023 상반기 주요 규제 동향 | ① 회계제도 보완 방안 마련 - 회계투명성 제고와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회계제도 보완 ②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③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

IV. 주요 행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 구분 | 설명 |
|----|---|
| 일시 | 상시 |
| 장소 | 온라인 시청 |
| 개요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3.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4.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5.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6.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hansukim@deloitte.com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hyunjeong@deloitte.com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hbkim@deloitte.com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junoh@deloitte.com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krccg@deloitte.com

 Deloitte Insights

내 손안의 경영 산업 트렌드,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카카오톡채널

딜로이트는 항상 새로운 시각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가장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딜로이트 인사이트 카카오톡채널과 모바일 앱에서 더 많은 인사이트를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IOS]



[카카오톡 채널]



Deloitte.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Bengaluru,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Mumbai, New Delhi,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